

	<b>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및 출결처리 안내</b>	<b>삼례중학교 가정통신문 제 58호</b>
		<b>2021년 8월 25일</b>
<b>(우)55341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로53-23 ☎ 063-291-2624,</b>		<b><a href="http://samrye.ms.kr">http://samrye.ms.kr</a></b>
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
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‘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(제5-1판)’ 지침에 따라, 코로나19 관련 학생 등교중지 기준 및 출결처리에 관해 안내 드립니다. 참고 바랍니다.

◆ 다음과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 등교를 중단합니다.

<b>①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,</b> 등교를 중단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자가격리 준수
<b>②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</b> 은 동거인이 격리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 ※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, 1)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) 격리 통지를 받은 ‘즉시’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
<b>③ 학생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,</b>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를 중단 ※ 다만 선제검사(대회참여, 이동검체검사 등)의 경우, 적용 예외

◆ 자가진단 항목 변경 안내

**< 학생용 >**

<p>1. 학생 본인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*이 있나요?          * (주요 임상증상) 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         (단, <u>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‘아니오’ 선택</u>)</p> <p>2.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?          ※ <u>감염예방 목적(직업특성, 대회참여 등)의 진단검사인 경우는 ‘아니오’ 선택</u></p> <p>3.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?          ※ ①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또는          ② 격리 통지를 받은 ‘즉시’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이 없었던 경우는 ‘아니오’ 선택</p>
---

◆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의 출결처리

상황	출결처리	출결 증빙자료
교내에서 임상증상 발현 시	선별진료소 방문을 기본 원칙으로 검사 당일엔 '출석인정조퇴' 처리	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ex. 문자 통지 사본 등)
	검사 다음날(보통 오전 중에 검사결과가 나옴) 결과가 '음성'으로 나온 경우, 12시까지 등교하면 오전 수업을 '출석인정지각' 처리	
	검사 다음날 오전에 결과가 '음성'으로 나왔음에도 등교하지 않은 경우, '병결' 처리	
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미등교 시	선별진료소 방문을 기본 원칙으로 검사 당일엔 '출석인정결석' 처리	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ex. 문자 통지 사본 등)
	검사 다음날 결과가 '음성'으로 나온 경우, 12시까지 등교하면 오전 수업을 '출석인정지각' 처리	
	검사 다음날 오전에 결과가 '음성'으로 나왔음에도 등교하지 않은 경우, '병결' 처리	
	선별진료소를 방문하였거나 콜센터 및 보건소와 통화하였으나, 보건당국의 판단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옆 항목의 3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'출석인정결석' 처리	① 학부모 확인서 ②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③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(또는 보건소나 콜센터와의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)  ※ ①,②번 서류를 제출하였어도 ③번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, '병결' 처리

2021년 8월 25일

삼 레 중 학 교 장 (직인생략)